

김치만두 일본 수입자 라벨 표기 방법

조사회신일 : 2016.10.20

품목 : 김치만두

I. 상품개요

- 상품명
- 김치만두
- 상품 형태
- 냉동 김치만두

II. 수입자 라벨 표시안

1. 수입자 표기 예시

(포장용기의 잘 보이는 곳에)

○ 50개 입 (8포인트)

명칭	냉동 만두
원재료명	양배추 김치(양배추, 무, 고춧가루), 건조무, 돼지고기, 야채(파, 부추) * 정보 보호상 일부 성분은 생략함
첨가물	가공전분, 유화제, 조미료, 산미료, 향료 * 정보 보호상 일부 성분은 생략함
내용량	1500g
상미기간	Yyyy.mm.dd
보존방법	-18℃ 이하에서 보관하십시오.
동결 전 가열 유무	가열했습니다.
가열조리 필요성	가열해서 드십시오.
원산국명	한 국
수입자	○○○

조리방법 :

- 냉동된 만두를 그대로 약 6-7 분 정도 찌주십시오.
- 다 찌진 만두를 간장에 찍어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

사용상의 주의사항 :

- 기구 등에 따라 조리시간이 다르므로, 조리방법을 확인하시고 조리하십시오.
- 조리시에는 냉동고에서 필요분만 꺼내어 조리하시기를 바랍니다.
- 풍미와 맛을 보존하기 위해 냉동된 채로 보존하십시오.
- 상미기간을 확인하십시오.
- 조리과 드실때에는 화상에 주의하십시오.
- 한 번 해동된 것은 다시 냉동시키지 않는것이 좋습니다.
- 본제품은 메밀, 계란, 오징어, 깨, 닭고기, 송이버섯을 사용하는 설비로 제조하고 있습니다.

2. 영양성분 표시

영양성분표시 100g 당(조리 전)			
에너지	180 kcal	탄수화물	25 g
단백질	10 g	식염상당량	1 mg
지질	8 g		

III. 표시 주의사항

1. 라벨표기에 대한 주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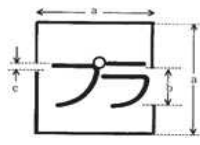
- 원재료명과 첨가물을 「/」로 구분하는 기재방법도 인정됩니다.
- 첨가물 기재순은 중량순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.
- 조미료로 사용한 첨가물에 핵산이 많을 경우, 「(핵산 등)」으로, 유기산이 많은 경우에는 「(유기산 등)」으로 기재해주시오.
- 원재료에 사용된 주정이 캐리오버에 해당되는 경우, 주정의 기재를 삭제합니다.

2. 성분표시에 대한 주의사항

- 구 기준의 나트륨표기가 아닌, 식염상당량의 표기가 필요합니다.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나트륨 390 (mg) x2.54/1000 =0.9906(g)
(식품표기기준의 P.16 영양성분을 확인하십시오)

3. 문자 크기 및 재활용 마크

- 일괄 표시 및 영양 표시의 글자 크기가 8 포인트 이상임을 확인하십시오.
(표시가능면적이 대략 150cm²이하인 경우에는 5.5포인트 이상 활자 기재.)
- 플라스틱 마크의 한변의 높이 및 종이 마크의 높이는 6mm 이상입니다.
- 문자크기는 JIS Z8305규격 (1포인트=0.3514mm)에 따르십시오.



포장 트레이



외장

IV. 기타사항

1. 참고 표기 사항

- 표시에 대하여 명확히 의무화 되어있는것은 아니으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표시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. 글자 크기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지정이 되어있지는 않으나, 사용자가 보기쉬운 크기로 표시하도록 해주십시오.
- 표시에
본제품의 제조공장에서 메밀, 계란, 오징어, 깨, 닭고기, 송이버섯을 포함하는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.

2. 표시가 금지되어있는 사항

- 식품표기 기준에서의 금지표시
 - 상품표시는 실제 상품보다도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오인시키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일부 식품은 **식품 표시기준** 및 **공정 경쟁 규약** 등에 의거하여 금지가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.
- 금지표시 예시
 - 실제 상품보다 현저하게 우량하거나 유리하게끔 오인할만한 사항을 표시해서는 안됩니다.
 - 내용과 모순되는 용어의 표시를 금지합니다.
 - 유아용 규격적용식품 이외의 식품은 유아용 규격적용식품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 또는 혼란을 주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 - 분별생산유통관리가 확인된 비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품 이외의 식품은, 비유전자변형을 의미하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 - 조직DNA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에 속하는 작물 이외의 작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품은 해당 농산물에 관하여 유전자변형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 - 나트륨소금을 첨가한 식품은 나트륨량의 표시를 금지합니다.

- 기능성 표시식품이외의 식품은 영양기능성식품에 대하여 별도의 금지표시가 있습니다.
- 보건기능식품 이외의 식품은 보건기능식품과 혼동되는 명칭, 영양성분의 기능 및 특정 보건목적이 기대되는 의도의 용어사용을 금지합니다.
- 시각장애인이 우유임을 알기 쉽게 하기위해 지봉형 종이팩 용기의 상단의 일부를 파내는 표시를 금지합니다.
- 일본농림규격의 등급심사를 통과한 식품이외의 식품은 등급을 나타내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그 외의 내용물을 오인시키는 문자, 그림, 사진 등의 표시를 금지합니다.

3. 관계법

식품표시기준

(http://www.caa.go.jp/foods/pdf/150320_kijyun.pdf)